.

국가교육위원회 제67차 회의

의안번호	제2026-13호	심의 · 의결 사항
의결일자	2026. 4. 9.	
공개여부	공개	

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(안)

제 출 자	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
제출일자	2026. 4. 9.

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(안)

□ 추진 목적

○ 현재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이외에 중요한 교육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**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필요**

□ 특별위원회 개요

○ (**운영 근거**)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특별위원회)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(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등

○ (**기능·역할**) **긴급**하고 **중요한 교육의제**를 **심의·의결**하기 위해 **사전 검토** 또는 **자문 수행**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구성·운영

※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,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

<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>

연번	분야	운영 방향	위원	임기
1	고교 교육	고교학점제, 고교 교육과정, 평가체계 등 고교 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제안	류방란 위원장 등 16명	'25.10.28.-'26.4.27.
2	인재 강국	첨단·인문·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, 인재 유출 방지, 해외인재 유치 등의 인재 확보 전략을 제안	반상진 위원장 등 17명	'25.11.4.-'26.5.3.
3	고등 교육	국가경쟁력 강화, 국가균형발전,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안 제안	장덕현 위원장 등 14명	'25.11.18.-'26.5.17.
4	영유아 교육	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	김성열 위원장 등 13명	'25.11.25.-'26.5.24.
5	학교 공동체 회복	교원, 학생,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회복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	김용 위원장 등 9명	'25.11.27.-'26.5.26.
6	AI시대 교육	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,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AI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 제안	안승문 위원장 등 12명	'25.11.28.-'26.5.27.
7	대학 입학 제도	과도하고 소모적인 대학 입시경쟁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유·초·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 제안	차정인 위원장 등 13명	'25.12.3.-'26.6.2.
8	인문 사회	인문학적 소양과 문화·예술 감수성,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양성,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학문분야 진흥과 학술생태계를 위한 방안 제안	김명환 위원장 등 13명	'25.12.8.-'26.6.7.
9	민주 시민 교육	공동체 역량,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함양하는 토론교육·생태교육·헌법교육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마련	고대혁 위원장 등 15명	'25.12.22.-'26.6.21.

※ 문해력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중

□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

○ **(분야) 사교육 특별위원회**

○ **(필요성) 소득수준과 지역**에 따라 **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의 격차**가 크게 나타나고, **영유아 단계의 사교육 확산**으로 **교육격차의 조기 고착화** 우려 심화

- **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**하고, **공교육의 신뢰 회복**과 **교육격차 완화**를 위한 **정책대안을 마련**하기 위해 사교육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

○ **(운영방향) 사교육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제안**

- **권역별 토론회** 등을 통해 **다양한 전문가**와 **국민들의 의견**을 듣고 **정책과제와 연결 가능**한 **실효적인 대안** 도출 추진

○ (**위원구성**) **연구자·현장전문가 등** 관련 분야에 대한 **전문지식**과 **경험**이 **풍부한 사람 중**에서 **성별** 등을 **고려**하여 위원장 1명 포함 **21명 이내**의 위원으로 구성

- (**위원**)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후 명단 공개 예정

○ **(임기)** 위촉일로부터 6개월(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
□ 향후 계획(안)

○ **신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: ~'26.4월**

붙임 **사전 체크리스트 및 직무윤리 서약서**

서 약 서

본인은 국가교육위원회 _____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한 외부 누설 금지
2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 및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금지
3. 위원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
4.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.

2026. . .

성명 : (서명)
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

사전 체크리스트

1. 결격사유*

*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제7조(결격사유) 준용

※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, ∨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

■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/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~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(성폭력범죄, 스토킹범죄 등)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(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등)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해당하지않음 □
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 등록 여부	해당하지않음□
■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	해당하지않음□

2. 겸직금지*

*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제9조(겸직금지) 준용

※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, ∨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여부	해당하지않음□
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종사 여부	해당하지않음□

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. . .

성명 : (서명)
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